

거 소 투 표 신 고 서

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·시·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.
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(년 월 일) 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 소 (주민등록지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세 대 주 성 명	
거 소 (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
성 명	생년월일	성별	남·여
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○표를 하고, 1·2·3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			
거소투표 신고사유	확 인 자	확 인 란	확 인 자 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
1.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	부대장· 경찰관서장	· 장의 직명 (성명) ①	
2. 병원·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·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·수감된 사람	병원·요양소· 수용소·교도소 · 구치소의 장	· 장의 직명 (성명) ①	
3.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	주조지나 머무는 곳의 통·리·반의 장	· 장의 직명 (성명) ①	
4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5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			
6.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 람			

본인은 「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①

구·시·군의 장 귀하

주 : 1.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.

2. "거소"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 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과 고유 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,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, ③병원·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·교도소·구치소에 수용·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·시설명을,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 등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(세입자는 "○○○댁"까지) 자세히 적어야 하며, "전화번호"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3. 지방의회의원소환투표의 경우 "거소투표 신고사유" 중 "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"은 해당 구·시·군의 관할구역을 말 합니다.

4.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·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(職印)을 찍거 나,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·리·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

5.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.

6.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 를 보내지 아니합니다.

7.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「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 항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